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51448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1. 11. 25.

판결 선고2022. 1. 13.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667,6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 주문과 같다.

예비적 : 소외 D과 피고 B 사이에서 2017. 5. 31.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1,667,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1,667,6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외 D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905,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31938, 3심 대법원 2015다61347)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

나. 원고는 위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0288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D은 2017.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위 법원은 2017. 5. 18. 위 D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21,667,6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D이 항고하였으나 2017. 10. 18.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D은 2017. 5. 4.경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서초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8.경까지 계약금 8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위 D은 2017. 5. 23. 14:04경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14:39경 위 D의 처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D은 2017. 5. 25. 14:33경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14:52경 피고 C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D은 2017. 5. 31. 14:56경 피고 B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15:02경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위 D은 2017. 6. 2. 위 F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위 D은 2018. 5. 28.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1413, 2018하면101413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파산선고 후 2019. 6. 26. 파산폐지결정을 하였으나, 2019. 10. 8. 위 D의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D과 피고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위 D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D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이후 위 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282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위 D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대법원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대법원 2015다61347호)에서 최종 패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최고서를 2017. 4. 24. 송달받고 이를 다투었으나, 2017. 5. 18.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말소 판결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1,667,60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초경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해 4월경 다른 채권자 G으로부터 민사소송(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가단55803호)을 제기당하여 패소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기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은행에 예금해 둔 금원을 송금하고 마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뒤 즉시 피고인의 처 C의 계좌로 이를 다시 돌려받아 위 금원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14:04경 불상지에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14:39경 B로부터 처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20,000,000원을 즉시 송금받고, 마찬가지로 같은 달 25. 14:33경 20,000,000원을 B에게 송금한 뒤 같은 날 14:52경 B로부터 C 계좌로 위 20,000,000원을 즉시 송금받고, 같은 달 31. 14:56경 100,000,000원을 B에게 송금한 뒤 15:02경 B로부터 C 계좌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의 예금 총 140,000,000원을 B에게 송금한 직후 C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금원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 16, 17, 20 내지 25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D이 2017. 5. 31. 피고 B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로 하여금 이를 다시 피고 C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돌려받은 것은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원고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이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소송비용확정액 21,667,600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D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들이 위 고소사건에서 위 D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혐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위 D의 처이고, 피고 B는 위 D와 친구사이로서 2009년부터 위 D와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2018. 5. 17.부터 위 D이 피고 B의 집에서 거주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점(갑 제12호증), 피고 B는 위

고소사건에서는 물론이고 현재 이 사건에서도 위 D이 자신에게 변제하고, 자신이 곧바로 위 D의 처인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금전대여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신들의 행위가 위 D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방조행위와 위 D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1,66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민